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17105호, '20.3.24 개정, '20.9.25 시행)되어 법률에서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쓰는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도 해당용어를 자구수정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
(안 제31조, 제32조, 제33조)

○ 좌수(座數) → 계좌 수, 총좌수 →총계좌 수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

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4항제2호 중 “「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”을
“「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7조의2제6호 중 “「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”을
“「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7조의3제1항제6호 중 “「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”
을 “「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1조 전단 중 “좌수(座數)”를 “계좌 수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좌수”를 “계좌 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1
좌”를 “1계좌”로, 같은 호 및 제3호 중 “총좌수”를 각각 “총계좌 수”로
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“좌수”를 각각 “계좌 수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좌수”를 “계좌 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) ① ~ ③ (생 략) ④ 법 제60조제3항(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)에 따라 조합이 신 용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서 정하는 한도 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. 1. (생 략) 2. 「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 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 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기준	제18조(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「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에 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」-----
제27조의2(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 · 관리) 중앙회가 법 제138 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 의 상환준비금을 운용 ·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 략) 6. 「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 선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에 대한 자금 지원	제27조의2(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 · 관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「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에 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」----- -----

제27조의3(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·관리) ① 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·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「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

7. ~ 9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1조(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)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내용, 좌수(座數), 발행가액, 납입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와 우선출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국가가 우선출자자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
제32조(우선출자의 청약)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

제27조의3(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·관리) ①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「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-----

7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) -----

----- 계좌 수 -----

-----.

-----.

제32조(우선출자의 청약) ① -----

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<u>좌수</u>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정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(생략) 2. 출자 <u>1좌</u>의 금액 및 <u>총좌수</u> 3. 우선출자 <u>총좌수</u>의 최고한도 4.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<u>좌수</u> 5. (생략) 6.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 금액·내용 및 <u>좌수</u> 7. ~ 9. (생략) 제33조(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)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<u>좌수</u>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<u>계좌 수</u> ----- ----- --.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 <u>1계좌</u>----- <u>총계좌 수</u> 3. ----- <u>총계좌 수</u>----- 4. ----- ----- <u>계좌 수</u>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<u>계좌 수</u> 7. ~ 9. (현행과 같음) 제33조(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계좌 수</u>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430